

CHICAGO BOARD OF TRADE 제재조치 공지

사건 번호: CBOT 13-9688-BC

비회원: Manoj Jindal

관련 규정: Rule 432 (“일반 위반”) (부분 발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 B.2. 공정한 거래원칙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업무 처리절차에 관여;
- Q. 거래소의 이익 또는 안녕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거래소의 품위 또는 명성을 손상하기 쉬운 행위에 관여.

검토 결과: 제재의 근거가 된 규정 위반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Manoj Jindal (“Jindal”)의 합의 제안에 따라 2016년 10월 4일 Chicago Board of Trade (“CBOT”) 영업행위규제위원회(Business Conduct Committee) 소위원회(“Panel”)는 Jindal이 CBOT 회원사의 고용인이었던 시점에 관련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CBOT Rule 400과 402에 의거 Jindal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확인하였다. 동 위원회는 Jindal이 2013년 7월에서 11월에 이르는 기간 중 수일 간 실제 거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여러 대두 선물시장에서 대규모 주문을 낸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Jindal의 거래전략이 CME Globex 전산거래 플랫폼(“Globex”)을 통해 시장 한편에서는 소규모 주문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전략에 따라 Jindal은 소규모 주문 제출 후 Globex를 통해 최우선 매도(매수) 호가 혹은 그 근처에서 시장의 반대 포지션 쪽에 복수의 대규모 주문을 제출했다. 일단 소규모 주문이 체결되면 Jindal은 많은 경우 대규모 주문을 취소했다. 위원회는 이 전략을 실행하여 매수/매도 세력의 불균형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남아 있는 Jindal의 소규모 주문의 반대 포지션 쪽으로 다른 시장참가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Jindal이 CBOT Rule 432.B.2. 및 432.Q.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제재 내용: 합의 제안에 따라 위원회는 Jindal에게 벌금 \$75,000를 부과하고, 30일간 CME그룹의 거래 플로어에 대한 접근 및 Globex를 포함하여 CME그룹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전산거래 및 청산 플랫폼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 접근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접근금지 기간은 2016년 10월 6일부터 2016년 11월 5일까지이다.

효력발생일: 2016년 10월 6일